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옥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지난 10월 20일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여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원하는 기관의 종사자들까지 보복이나 스토킹 등 2차 피해의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의 안전 역시 피해자 보호의 연장선상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나, 현행 조례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피해자와 지원기관 종사자 모두의 신변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법률상담 지원사업을 명시하여 피해자 보호체계를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사업에 법률상담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제18조의 제목을 ‘2차 피해 방지’에서 ‘신변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로 변경하여, 신변보호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셋째, 피해자 및 피해자 보호·지원기관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시장이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제적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피해자와 종사자 모두가 안심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가 한층 강화되고, 종사자의 안전 또한 제도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어 피해자와 종사자 모두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